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586 |
|----------|-----|

2017. 4. 2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20일

-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병옥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대형·특수 재난 등 급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 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정원 : 3,291명 → 3,363명 (+72)

- 소방공무원 정원 : 1,614명 → 1,686명 (+72)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구 분 | 소방정이상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현 행 | <u>1% 이내</u> | 3% 이내 | 10%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31% 이내 | <u>31% 이상</u> |
| 개 정 | <u>2% 이내</u> | 3% 이내 | 10%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31% 이내 | <u>30% 이상</u> |

○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소 방 정 : 15명 → 17명 (+ 2)
- 소방령이하 : 1,599명 → 1,669명 (+70)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 재난 등 급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119특수구조단에 15명, 단양소방서에 33명, 소방수요 증가 격무부서 및 현장출동 최소인력 확보에 24명 등 총 7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3,291명에서 3,363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1,614명에서 1,686명으로 72명 증원하고,
-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소방정이는 1% 이내에서 2% 이내로, 소방사는 3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고,
- 정원조정 내역을 소방정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하고, 소방령이하는 1,599명에서 1,669명으로 7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형·특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119특수구조단 신설, 현장활동을 위한 단양소방서 개소 및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586호 |
| 의결 연월일 | 2017년 월 일 (제355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86 |
|----------|-----|

제출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형·특수 재난 등 급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 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정원 : 3,291명 → 3,363명 (+72)
 - 소방공무원 정원 : 1,614명 → 1,686명 (+72)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구분 | 소방정이상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현행 | <u>1% 이내</u> | 3% 이내 | 10%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31% 이내 | <u>31% 이상</u> |
| 개정 | <u>2% 이내</u> | 3% 이내 | 10%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31% 이내 | <u>30% 이상</u> |

-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소방정 : 15명 → 17명 (+ 2)
 - 소방령이하 : 1,599명 → 1,669명 (+70)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91명”을 “3,3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614명”을 “1,686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 | | | | | |
|-----|-------|--------|--------|--------|---------|---------|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9급 | 전문경력관 |
| 비 율 | 6% 이내 | 18% 이내 | 33% 이내 | 34% 이내 | 7.5% 이상 | 1.5% 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 | | | |
|-----|--------|--------|--------|--------|
| 구 분 | 연구직 | | 지도직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 율 | 20% 이내 | 80% 이상 | 26% 이내 | 74% 이상 |

3. 소방직공무원

| | | | | | | | |
|-----|-------|-------|--------|-------|--------|--------|--------|
| 구 분 | 소방정이상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비 율 | 2% 이내 | 3% 이내 | 10%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31% 이내 | 30%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 | | | | | | |
|-----|---------|--------|--------|--------|--------|-------|
| 구 분 | 4급상당 이상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비 율 | 34% 이내 | 26% 이내 | 10% 이내 | 10% 이내 | 18% 이내 | 2% 이상 |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
| 총 계 | 3,363 | - | | | | |
| 정무직 계 | 1 | 1 | | | | |
| 도지사 | 1 | 1 | | | | |
| 일반직 계 | 1,438 | - | | | | |
| 1~2급 | 1 | | | | | 1 |
| 2~3급 | 2 | 1 | 1 | | | |
| 3급 | 9 | 7 | | 1 | | 1 |
| 3~4급 | 2 | 2 | | | | |
| 4급 | 66 | 42 | 7 | 5 | 6 | 6 |
| 5급이하 소계 | 1,340 | - |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8 | - | | | | |
| 별정직 계 | 12 | - | | | | |
| 1급 상당 | 1 | 1 | | | | |
| 4급 상당 | 3 | 3 | | | | |
| 5급상당 이하 소계 | 8 | - | | | | |
| 연구직 계 | 157 | - | | | | |
| 연구관 | 30 | 1 | | 27 | 2 | |
| 연구사 | 127 | - | | | | |
| 지도직 계 | 26 | - | | | | |
| 지도관 | 6 | | | 6 | | |
| 지도사 | 20 | - | | | | |
| 소방직 계 | 1,686 | - | | | | |
| 소방정 | 17 | 5 | | 12 | | |
| 소방령이하 | 1,669 | - | | | | |
| 교육공무원 계 | 43 | - | | | | |
| 총장 | 1 | | | 1 | | |
|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 30 | | | 30 | | |
| 조교 | 12 | - | | | |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9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4명</p> <p>3. ~ 4. (생략)</p> | <p>제2조(정원의 총수) ----- -----<u>3,363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686명</u></p> <p>3. ~ 4.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개정사유

-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단양소방서 개소, 현장부족 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정원조정 내역 (안 제2조)
 - 소방공무원 정원 : 1,614명 → 1,686명 (+72명)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추계의 전제 : 증원 +72명
- 추 계 결 과 : 인건비 26,978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 구 분 | 계 | 1차년도 (2017년) | 2차년도 (2018년) | 3차년도 (2019년) | 4차년도 (2020년) | 5차년도 (2021년) |
|---------|------------|-----------------|-----------------|-----------------|-----------------|-----------------|
| 세 출 | 26,978,717 | 3,216,696 | 5,679,766 | 5,850,159 | 6,025,663 | 6,206,433 |
| 공무원 인건비 | 26,978,717 | 3,216,696 | 5,679,766 | 5,850,159 | 6,025,663 | 6,206,433 |

※ 매년 임금인상률 3%(예상치) 적용 계산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상